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기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64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27.

발 의 자 : 김기표 · 신영대 · 백혜련
권칠승 · 맹성규 · 문진석
한민수 · 한정애 · 추미애
이연희 · 김남희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근로기준법의
법정형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머물러 있어 악성·반복 체불 사업
장에 대한 억지력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 실제로
는 대부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제재 실효성
이 떨어지고, 청년·비정규직·일용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체불 피해
가 집중되어 심각한 사회·경제적 불안을 초래하고 있음.

또한 현행 임금체불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일부 사
업주가 피해자의 합의 여부를 지렛대로 삼아 임금 지급을 지연시키는
등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임금체불 법정형을 상향하여 사업주의 법 준수 의무를 강화하
고, 반의사불벌조항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 한하여 형을
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임

금 보호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. 이를 통해 체불 예방과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,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07조 및 제109조).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7조 중 “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”을 “제23조제2항, 제36조, 제40조, 제43조, 제44조, 제44조의2, 제46조, 제51조의3,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”로 한다.

제109조제1항 중 “제36조, 제43조, 제44조, 제44조의2, 제46조, 제51조의3, 제52조제2항제2호, 제56조, 제65조”를 “제65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”를 “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을 감면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7조(벌칙)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제107조(벌칙) ----- --제23조제2항, 제36조, 제40조, 제43조, 제44조, 제44조의2, 제46조, 제51조의3,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----- ----- -----.
제109조(벌칙) ① 제36조, 제43조, 제44조, 제44조의2, 제46조, 제51조의3, 제52조제2항제2호, 제56조, 제65조,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제109조(벌칙) ① 제65조----- ----- ----- -----.
② 제36조, 제43조, 제44조, 제44조의2, 제46조, 제51조의3,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<u>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</u> . 다만,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, 제43조, 제44조,	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을 감면한다.</u> ----- ----- ----- -----

제44조의2, 제46조, 제51조의3,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 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----- ----- ----- -----.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